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19

발의연월일: 2021. 8. 5.

발 의 자: 김은혜·강기윤·김용판

구자근 · 최형두 · 강대식

김태호 · 송석준 · 조경태

김성원 · 지성호 · 송언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 소유자등에게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고 진료비의 과도한 편차로 동물 소유자등의 진료에 대한 불신이 높음.

또한 진료항목의 비표준화로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 민간동물보험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물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으로 0.25%에 불과하여 동물 소유자등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동물 복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동물 진료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연구,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

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동물진료제도의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동물 진료비의 현황에 대한 조사
- 2.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 · 연구
- 3.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 · 연구
- 4.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사 · 연구
- 5. 그 밖에 동물진료제도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동물진료제도의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1. 동물 진료비의 현황에 대한조사 연구 3.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 · 연구 4.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사 · 연구 5. 그 밖에 동물진료제도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